

적 자세로 돌아섬

- 하지만 SCO가 리눅스와 관련된 로열티 기준 (단일 서버 프로세서당 699달러, 데스크톱 199달러, 임베디드 단말기 32달러)을 제시하고 포천 500대 기업 중 하나가 이를 받아들이는 등 사태는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음
- 리눅스를 둘러싼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, IBM 등 어느 일방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확실적인 대응보다는 각 기업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봄. 예컨대 최근 삼성전자가 몬타비스타와 임베디드 리눅스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리눅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, 리눅스와 관련된 자사의 손익계산을 마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임
-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리눅스와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확대 추세이며, 그러한 의미에서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IBM이 오히려 SCO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브루스 페렌스의 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참고자료:

- [1] CNET, "Big Blue files counterclaims against SCO", 2003. 8. 7
- [2] _____, "Red Hat files suit against SCO", 2003. 8. 4
- [3] Bruce Perens's speech at LinuxWorld Expo, 2003. 8. 5

미국내 '스팸메일 수신 거부 리스트' 논쟁

o 주요 내용

- 미국 내에서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, '스팸메일 수신 거부리스트(Do-not-spam list)'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음.
- '스팸메일 수신 거부리스트'란 스팸메일을 받고 싶지 않은 이용자가 수신

- 거부 리스트에 자신을 등록하면 스팸업자들이 리스트에 등재된 사람들에게는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,
-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가 제안하여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반스팸 법안이 이러한 ‘스팸메일 수신 거부리스트’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, 지난 7월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내 소비자들의 74%이상이 동 제도의 시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 - ‘스팸메일 수신 거부리스트’ 제도는, 영국에서는 이미 시행된바 있으며 미국내 일부 주에서 시행되어 오다가 올 가을부터 전국적인 확대시행이 예정되어 등록작업이 진행중인 ‘전화수신 거부리스트(Do-not-call list)’ 제도에서 착안한 것임.
 - 동 제도는 이용자가 전화수신 거부리스트에 자신의 가정용 전화번호나 휴대전화의 번호를 등록할 경우 5년간 수신거부가 유효하며,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3개월 간격으로 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반업체는 전화 통화당 1만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음.
 - 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등록 한달여 만에 거부리스트 등록자 수가 3천만명을 넘어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임.
 - 그러나 전화수신 거부리스트 제도에 대해 미국내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명백한 과잉규제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, 연방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.
 - 또한 그들은 전화수신 거부리스트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매출액이 500억 달러가 감소하고, 관련된 일자리가 200만개 이상 사라지게 되어 실업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.
 - 미국내 법률전문가들은 ‘전화수신 거부리스트 제도’에 대한 소송결과가 ‘스팸메일 수신 거부리스트 제도’의 도입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o 분석

- 먼저 미국내 법률가들은 ‘전화수신 거부리스트 제도’ 소송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들의 태도를 볼 때, 텔레마케팅 업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

힘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- 즉, 미국 법원의 태도는 우선 개인적 통신의 경우와 상업적 통신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며, 헌법상의 보호 또한 양자에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.
- 다만, 이러한 ‘수신거부 제도’와 관련하여 또 다른 비판자들은 거부리스트가 해커들에게 손쉬운 타겟이 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.
- 국내에서도 각종 통신판매 및 스팸메일 등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송신을 제한하면서 광고성 정보임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되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필터링 없이 송신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, 상술한 미국내의 움직임들을 참조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.

참조 기사

- [1] news.com.com, “Spam foes wary of do-not-call suits”, 2003. 7. 29.
- [2] news.com.com, “Do-not-spam plan winning support”, 2003. 7. 23